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

의안번호	제44호
------	------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승필 의원 외 4명
제출연월일	2023. 4. 11.

#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4호
------------------	------

발의연월일 : 2023. 4. 11.

대표발의자 : 서승필

공동발의자 : 이태모, 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 1. 제안이유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장기재직자에 대한 자기성찰 기회를 확대하고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장기재직휴가 사용방법 개정 (제25조 제8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나.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 : 2023. 4. 11. ~ 4. 15.(5일간)

## □ 개정조례안

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

#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8항 중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재직기간을 지나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를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재직기간별 부여된 휴가는 해당기간 중 모두 사용하되,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서승필 의원 외 4명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5조(특별휴가)</p> <p>① ~ ⑦ (생략)</p> <p>⑧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u>제1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재직기간을 지나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u></p> <p>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p> <p>2.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p> <p>3. 30년 이상 : 30일</p> <p>⑨ ~ ⑫ (생략)</p>	<p>제25조(특별휴가)</p> <p>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 ----- ----- ----- <u>제1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재직기간별 부여된 휴가는 해당기간 중 모두 사용하되,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u></p> <p>1. ----- 2. ----- 3. -----</p> <p>⑨ ~ ⑫ (현행과 같음)</p>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